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14일, 김형동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2025.2.1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
영폐기)

제1차 전체회의(2025.2.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형동의원)

현행법은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및 유독물 등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같은 환경범죄 행위라도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적용받는 배출시설에서는 과징금 부과대상이었으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일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법률간 형평성 문제가 있고,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의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과 같이 위해성이 큼에도 이를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등 법률의 미비점이 있음

이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또한, 그 밖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환경부장관이 양도인의 처분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①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잔류성 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 허용기준을 「환경범죄단속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등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②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배출시설 중 대기, 폐수, 폐기물, 가축분뇨, 토양 배출시설 등을 「환경범죄단속법」의 배출시설로 포함하며, ③ 양수인등이 행정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그 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는 등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근거를 신설하고, ④ 「지하수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감시관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한 근거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불법배출행위 등 같은 환경범죄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고의적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등 국민건강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 부칙의 시행일과 관련하여 ①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 등은 규제대상의 준비기간 부여, 하위법령 위임사항 정비 등을 고려할 때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②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은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므로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형동)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사항

없음